

창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나52225(본소), 2021나52232(반소) 판결

[공사대금 · 지체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손정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박하영, 정동욱

변 론 종 결 2022. 8. 11.

판 결 선 고 2022. 9. 15.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1. 19. 선고 2018가단4508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2.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966,8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2.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62,750,000원¹⁾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11.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²⁾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9,7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1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전체적으로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 피고('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로부터 C공장 신축공사(D산업단지 내 통영시 E 소재 토지 지상에 사무동인 F동, 공장동인 G, H동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억 7500만 원(= 공사비 7억 7500만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3)), 기간 2017. 5. 15.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5. 18. 통영시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2017. 5. 23.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부지가 포함된 D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원피고는 2017. 8. 17.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7. 5. 15.부터 2017. 10. 30.까지로 변경하였다.4) 다. 한편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사무동인 F동의 구조를 '철골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7. 6. 7. 통영시에 F동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는 설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6. 13. 그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F동을 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시공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공장동 G동과 H동의 연결 기초 추가, ② 저수조 위치 및 구조물 변경, ③ 사무동 F동 창호 변경, ④ 공장동 전기내선 추가, ⑤ 전기 특고인입 추가, ⑥ 공장동 물받이 변경(함석 → 스텐), ⑦ 사무동 F동 외부 마감재 변경, ⑧ 진입로(정문, 후문) 바닥포장 변경, ⑨ 공장동(G동, H동) 기초바닥 두께 변경, ⑩ 공장동(G동, H동) 하부벽체 변경(판넬 → 옹벽), ⑪ 공장동 창호 변경에 관하여, 피고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또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착공도면)과는 다르게 추가 또는 변경시공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추가공사'라 한다)라. 피고는 2017. 12. 19. 통영시장으로부터 완공된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은행 내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뒤 그중 일부는 피고에게 다시 반환하였다(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9억 1225만 원을 지급받은 셈이 된다).

	세금계산서		지급일	원고에게 지급(원)	피고에게 반환(원)	누적 실지급액(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약금	2017. 5. 10.	100,000,000	2017. 5. 10.	77,500,000	24,750,000	85,250,000
		10,000,000	2017. 5. 17.	32,500,000		
1차 기성금	2017. 6. 13.	273,000,000	2017. 6. 13.	273,000,000	33,000,000	325,250,000
		27,300,000				
2차 기성금	2017. 7. 25.	250,000,000	2017. 8. 1.	250,000,000	33,000,000	542,250,000
		25,000,000				
3차 기성금	2017. 9. 27.	200,000,000	2017. 9. 27.	200,000,000		742,250,000
		20,000,000				
4차 기성금	2017. 11. 3.	120,000,000	2017. 11. 13.	120,000,000		862,250,000
		12,000,000				
			2017. 12. 15.	50,000,000		912,250,000
5차 기성금	2017. 12. 19.	57,000,000				
		5,700,000				
합계		1,100,000,000		1,003,000,000	90,750,000	912,2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1, 12호증, 을 제1 내지 5, 14 내지 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K, 당심 증인 M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통영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8억 7500만 원이고, 추가공사에 대해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공사비가 1억 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공사비는

9억 7500만 원이다.

2)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공사비는 9억 1225만 원(= 10억 300만 원 - 9075만 원)에 불과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6275만 원(= 9억 7500만 원 - 9억 1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초 미지급공사비에 대한 지체상금과 공기연장에 대한 정산금도 따로 청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함에 따라 그 감축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은 실효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도 제외되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에 없던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피고 사이에 추가공사비를 1억 원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음(즉,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피고가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M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5),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만, 원고는 피고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또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공사계약 시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첨부된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서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인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므로{위 표준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11억 원)이 대출을 위해 명목상 기재된 것이라고 하여 다른 부분까지 계약의 구속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추가공사로 인해 증가된 물량에 대한 (실)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제1심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추가공사비가 63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총 공사비 9억 3850만 원(= 8억 7500만 원 + 6350만 원)에서 기 지급한 9억 12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625만 원(= 9억 3850만 원 - 9억 1225만 원)이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으로 26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2018. 10. 11.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9.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초과지급 공사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초과지급한 공사비 59,750,000원7)의

지급을 구하나, 오히려 피고에게 추가공사비로 6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위 인정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약정 준공기일(2017. 10. 30.)을 넘겨 2017. 12.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체상금으로 35,784,000원을 구한다.

살피건대,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18949 판결 등 참조).

과연 원고가 약정 준공기일(2017. 10. 30.)을 넘겨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9, 20, 2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 증인 K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통영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제1심 증인 K(피고의 조카로서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였다)은 2017. 10. 30. 당시 펜스공사와 피고가 요청한 A/S 공사(= 건물 안 벽체 미비한 부분, 보수가 안 되어 흔들거렸던 부분, 창문 실리콘 처리가 미비한 점 등) 이외에 진행되지 않았던 공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크게 보면 그것이 다였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② 감리자(주식회사 Q, 감리원 R) 작성의 공정확인서(갑제11호증의 2)에도 2017. 10. 30. 기준 시공된 공정율이 98.3%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감리원 R은 사용검사에정일자를 “2017. 10. 30.”로 정하여 S건축사사무소에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자 지정 신청을 한 점(건축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하는바, 위 감리자가 2017. 10. 30.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미완성 등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T는 2017. 10. 27. 위 업무대행자 지정 통보를 받고 이후 2017. 11. 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공장동 내부에 임의로 설치한 철골구조물을 확인하고 그 철거를 지정한 후 2017. 11. 10. 다시 방문하여 위 지적사항이 조치된 것을 확인 후 사용승인 검사를 완료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되었다고 주장하는 항목들(반소장의 표2)은 대부분 이 사건 공사의 주요 구조 부분과 무관한 사소한 것들로서 잔손보기나 하자보수 등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것들인 점, ⑥ 이 사건 공사로 완공된 건물에 관하여 2017. 12. 19.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어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였는지 여부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여부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시공한 부분 중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사는 2017. 10. 30.경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되었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다(즉,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허가도면) 기준으로 별지 목록1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합계 7980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위 하자보수비용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또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을 위해 작성된 것이 준공도면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임의로 설계도면의 내용을 변경하여 준공도면을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건축주인 피고나 공사감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전이나 사용승인 전에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감정인 P에 대한 하자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2 해당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보수에 합계 32,428,74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별지 목록2 순번 제1항 기재 하자(G동 및 H동 바닥에 크랙발생)와 관련해서는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인 P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콘크리트의 휨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단면의 상하면에 철근을 배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공사의 당초 설계도면상 포장콘크리트 단면의 중심선에 와이어메시가 위치되어

있었고 변경도면 또한 와이어메시가 철근으로 재료변경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 설계가 구조검토에 따른 휨보강설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감정인은 단순히 철근배근 자체만 놓고 본다면 배근시공하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부지는 매립지이므로 구조물 자체의 중량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매립지반의 침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단, 위 크랙발생은 그 발생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침하에 따른 균열이라고 보다는 표층다짐불량에 기인한 바가 크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6,966,845원(= 별지2 목록 제1항의 하자보수비용 중 10,307,929원(= 25,769,824원 × 40%, 원 미만 버림) + 같은 목록 제2 내지 10항의 하자보수비용 합계 6,658,9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1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9.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상제, 판사 장우영, 판사 진민희

목록1

순번	하자 내용
1	G동 및 H동 바닥에 크랙발생
2	공장동 후문 자바라형 대문 미시공
3	F동 옥상 외벽페인트 미시공
4	F동 기숙사바닥 테코타일 미시공
5	공장 F동 세미나실, 연구실 건식벽(드라이월) 미시공
6	F동 옥상 신축줄눈 미시공
7	F동 옥상방수터(조적) 미시공
8	F동 옥상옥탑점검사다리 미설치
9	F동 전체 창문에 방충망 미설치
10	F동 TK4알루미늄 복합판넬 오시공
11-1	F동 1층 남녀 탈의실 THK5 고급장판 미시공
11-2	F동 1층 남녀 탈의실, 2층 기숙사실 온수온돌 미시공
12	G동 탕비실 문 미설치
13	G동 탕비실벽 미시공
14	G동 탕비실내 싱크대 미시공
15	G동 정두리벽 및 화장실, 탕비실 외벽 미시공
16	G동 화장실 칸막이 미시공
17	G동 탕비실내 바닥 미시공
18	G동 치마 오시공
19	H동 탕비실 문 미설치

20	H동 탕비실벽 미시공
21	H동 탕비실 내 싱크대 미시공
22	H동 정두리벽, 화장실벽, 탕비실벽 외벽 수성페인트 미시공
23	H동 화장실칸막이 및 화장실 천정 미시공
24	H동 처마 오시공
25	F동 싱크대 미시공

목록2

순번	항목	하자보수비용
1	G동 및 H동 바닥에 크랙발생	25,769,824원
2	공장동 후문 자바라형 대문 미시공	2,270,117원
3	F동 옥상 외벽페인트 미시공	388,049원
4	F동 기숙사바닥 데코타일 미시공	333,492원
5	F동 옥상 신축줄눈 미시공	653,669원
6	F동 옥상방수터(조적) 미시공	472,465원
7	F동 옥상옥탑점검사다리 미설치	306,864원
8	F동 전체 창문 방충망 미설치	2,088,508원
9	F동 THK4 알루미늄 복합판넬 오시공	187,251원
10	F동 1층 남너탈의실, 2층 기숙사실 온수온돌 미시공	145,752원
합계		32,428,740원

1) 원고는 제1심에서 합계 100,547,945원(= 미지급공사비 57,500,000원 + 지체상금 15,147,945원 + 공기연장에 따른 정산금 27,900,000원) 중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미지급공사비를 62,750,000원으로 확장하고, 지체상금과 정산금을 청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22.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변경후 청구취지'란에 단순히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2018. 10. 11.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뜻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3) 피고는 은행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은행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계약금액을 11억 원(공급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으로 하는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공사비 7억 75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아닌— 위 명목상의 공급가액(10억 원)에 따른 부가가치세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약정한 8억 75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 금원을 피고에게 다시 반환해주기로 하였다.

4) 그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상의 명목상 계약금액과 동일한— 11억 원, 공사기간이 2017. 5. 15.부터 2017. 10. 30.까지, 기타변경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대상공사로서 공기연장분에 대하여 사후정산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변경계약서(갑 제2호증)가 다시 작성되었다.

5) 당심 증인 M은 2017. 7.경 피고측에 추가공사 내역서(갑 제8호증)를 전달하면서 추가 공사에

다른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였고, 추가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확정된 다음 2017. 8. 17.

변경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7. 9. 1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C 기성요청에 따른 실정보고 건’(갑 제6호증)에는 ‘차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와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2017. 8. 20. 작성된 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계약금액란에 “85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외 별도금액란에 “90,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고로, 위 계약외 별도금액 90,75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한 금액과 일치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주장의 총 공사비 9억 7500만 원 또는 추가공사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6) 피고는 제1심에서 아래 가. 내지 다.항의 청구 외에도 싱크대 설치 비용(440만 원) 청구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싱크대 비용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싱크대 비용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7)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8억 7500만 원”이 아닌 “8억 5200만 원”으로 오기함에 따라 잘못 계산된 것이나, 여기서는 2020. 3. 30.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랐다.